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555
----------	------

2020. 6. 17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 5. 25. 오중석 의원
2. 회부일자 : 2020. 5. 29.
3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20. 6. 17. 상정·의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오중석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경비원 등을 포함한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. 이러한 문제들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역행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. 이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을 통해서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(안 제6조의2)

Ⅲ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·복지 증진과 관련한 사항 중 심리상담, 무료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오중석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 시장 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</p> <p>2.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비용 지원</p> <p>3.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4.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	<p>제6조의2(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 권·복지 증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비용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</p> <p>5. 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</p> <p>6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
- 최근 강북구 공동주택 경비원의 폭행·사망사고¹⁾ 이후 공동주택 경
비원의 갑질피해 예방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

1) “주민 폭행에 극단선택 경비원…경비초소 분향소에 주민 추모물결”, ‘20.5.11, 연합뉴스

이 개정조례안은, 공동주택 단지 노동자에 대한 인권·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과 치유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‘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’과, ‘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, 이 조문의 제명을 ‘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’에서 ‘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’으로 그 대상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.
- 참고로 강북구 사고 이후 서울시에서는 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」에 ‘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, 의무, 권리 등에 관한 규정’을 신설하는 준칙을 개정하였으며²⁾, 강북구에서는 「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」을 수립함³⁾과 동시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등 관련 법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되어⁴⁾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에서도 다각적인

2) 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」 관련 개정사항(‘20.6.10 공포) : 제23조(입주자들의 의무) 중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추가, 제89조(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) 신설

3) 종합대책(‘20.5.14) 주요 내용

① 실태조사 실시

- 조사기간 : ‘20.5.18 ~6.19
- 대상단지 : 강북구 관내 관리사무소 위탁·자치 관리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60개소
- 조사방법 : (1차) 서면조사, (2차) 현장방문 조사 및 면담
- 조사내용 : 경비원 현황, 운영 방식, 근무형태, 복지 및 근무환경 등

② 강북구 조례안 제·개정 추진 중

-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2020.5.28. 구본승 의원 대표 발의
-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비원의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」 2020.5.27. 김명희 의원 대표 발의

③ 강북구립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등

4) 법령개정 건의사항(2건, 2020.5, 서울시구청장협의회→고용노동부/국토교통부)

-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단서 신설,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5조(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) 단서 신설

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.

- 이 개정조례안은 폭언·폭행 등 초기 상황 발생 시 심리·법률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
 - 보다 근본적 해소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인식전환, 공동체 활성화 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'예방대책'이 필요해 보이는 바, 조례안 개정 이후에도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음.
- 다만, 개정조례안 중 조문 제명을 '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'으로 명확히 한 것은 인권과 복지 대상 노동자를 강조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경비원 외에 미화원, 관리사무원 등을 제명에 추가하는 방안도 가능하리라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55
----------	---------

제안일자 : 2020. 06. 17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공동주택 단지 내 인권과 복지 대상 노동자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경비원 외에 미화원, 관리사무원을 포함하도록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조문 각호 외의 본문 중 ‘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’를 ‘경비원, 미화원,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노동자’로 함(안 제6조의2).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의2 각호 외의 본문 중 “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”를 “경비원, 미화원, 관리사무원 등(이하 이 조에서 ‘경비원 등’이라 한다) 단지 내 노동자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6조의2(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 시장은 공동주택단지내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의2(경비원 등 단지내 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 ----- <u>경비원 등 단지내 노동자의</u> -----</p>	<p>제6조의2(경비원 등 단지내 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 ----- <u>경비원, 미화원, 관리사무원 등</u> (이하 이 조에서 '<u>경비원 등</u>')라 한다) <u>단지내 노동자의</u> -----</p>
<p>1.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비용 지원</p>	<p>2. ----- 비용 -----</p>	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3.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4. <u>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</u></p>	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5. <u>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</u></p>	<p>5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4. 그 밖에 경비원 등 단지내 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</p>	<p>6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	<p>6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의 제목“(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”을“(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”으로 하고, 각호 외의 본문 중“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”를“경비원, 미화원, 관리사무원 등(이하 이 조에서 ‘경비원 등’이라 한다) 단지 내 노동자의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2호 중“일부비용”을“비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
5. 폭언·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고용유지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<u>일부비용</u> 지원</p> <p>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6조의2(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·복지 증진) ----- -----경비원, 미화원, 관리사무원 등(이하 이 조에서 ‘경비원 등’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비용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</u></p> <p>5. <u>폭언·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</u></p> <p>6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